

의안번호	2213663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11.7.
추계번호	25E566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생계곤란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9조의15(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)	○ 2025. 1. 1. 이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－ 대상: 체납원인, 납부능력 등 파악 위한 실태조사 결과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－ 체납액: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, 가산세,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 금액으로서 5천만 원 이내의 금액 － 특례내용: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(2028.12.31.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9조의15 (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생계형채납자의 소액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하려는 것으로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생계형채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주요 내용

구 분		주요 내용
요건	생계형채납자	- 채납원인, 납부능력 등 과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-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할 것 - 폐업일 직전 3사업연도 평균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
	소멸대상 체납액	- 2025. 1. 1.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, 각각에 부과되는 가산세,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
	선의의 채납	-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·처분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을 것
	한도	-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채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
	중복적용 금지	-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 제외
특례 내용		-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
신청기한		- 2026. 1. 1. ~ 2028. 12. 31.
특례 취소		-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당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납부의무 소멸 취소 및 체납처분

- 개정안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경우, 소득세수 및 부가가치세수 등의 감소가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요건에 부합하는 채납자 및 이들의 체납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현 시점에서 해당 자료를 습득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 -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나, 현 시점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알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